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발 의 자 : 박춘선 의원 외 17명
- 의안번호 : 제1754호
- 발의일자 : 2024년 4월 3일
-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2. 제안이유

-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를 정의하고, 시장이 산림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교육 지역계획 수립시 유아숲지도사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주요내용

- 가. 산림교육전문가 정의(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등)(안 제2조제3호 신설)
- 나. 유아숲 운영계획에 유아숲지도사 배치, 교육 등 활용방안 포함(안 제4조제5호 신설)
- 다. 산림교육전문가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의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시행 시 유아숲지도사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1월 제정¹⁾되었음.
- 법 제10조²⁾에서는 산림교육전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법 시행령 제12조³⁾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1)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시행 2020. 1. 9.] [서울특별시조례 제7484호, 2020. 1. 9., 제정]

2)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 별표 2(붙임참조)

- 본 조례안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서울시의 정책 현황에 맞게 반영하여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를 정의(안 제2조제3호)하고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하며, 매년 수립·시행하는 ‘유아숲 체험 시설 운영계획’에 유아숲지도사 배치, 교육 등 활용방안을 포함(안 제4조 제5호)하는 것으로 산림교육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산림교육전문가 배치기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6. 8.>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 (제12조 관련)

산림전문가	배치시설	배치기준
숲해설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명 이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1명 이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의 숲	1명 이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2명 이상
	「산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태숲 (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1명 이상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숲 및 생활숲	1명 이상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국립공원은 제외한다)	1명 이상
유아숲지도사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유아숲체험원	별표 3 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운영인력의 배치기준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숲지도사 활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1명 이상
숲길등산지도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1명 이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1명 이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2명 이상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국립공원은 제외한다)	1명 이상